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18.4.18., 개정 2019.10.31.>

상담기록관리부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

상담일시	2023.1.20.(금)	상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문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기타(메신저)
------	---------------	------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064-780-3

상담 내용 기존 교육 장소 대관 계약실적(2022. 12. 26. 리더십 스킬 향상 교육 등 3회)이 있는 호텔 담당자로부터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설 명절 선물을 명목으로 2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받은 경우 해당 기프티콘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문의

- 상담 결과
-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 해당 업체는 현재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향후 교육 장소대관을 위한 계약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함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라목에 의거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법인이므로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해당 기프트 카드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가목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금전 및 유가증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으로써 “금품등”에 해당함.
 -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의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오만원(₩50,000)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에 의거 기프트 카드(기프티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가증권으로 봄이 상당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2에 의거 선물에서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해당 기프트 카드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A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안의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유가증권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유권해석 사례집>

2023년 1월 20일

행동강령책임관

강종훈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18.4.18., 개정 2019.10.31.>

상담기록관리부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

상담일시	2023.1.26.(목)	상담유형	<input type="checkbox"/> 방문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메신저)
상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064-780-3

상담 내용

주거복지센터 운영 및 신사업 발굴 등 관련 국내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해 타 기관 방문 시 업무추진비 집행을 통한 제주 특산품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문의

상담 결과

-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에 의거 물품 등 일제의 재산적 이익을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주 특산품의 경우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해당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됨.
- 「청탁금지법」 제8조1항에 의거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청탁금지법」 제8조2항에 의거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5항에 의거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단순 주거복지센터 운영 및 신사업 발굴 관련 의견 청취 등 기관 방문 벤치 마킹을 진행하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벤치마킹 외에 별도의 계약 체결이나 검사·감사의 대상이 되는 등 다른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등의 제공이 금지될 수 있으며,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2023년 1월 26일

행동강령책임관

강 종 훈


(서명 보드인)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18.4.18., 개정 2019.10.31.>

상담기록관리부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

상담일시	2023. 3. 24.(금)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	-----------------	------	----------------------

상 담 요 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으로부터 우리 공사 위원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석 요청(사례금 지급 예정)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문의	장이 해당 조합 '공동운영 장이 해당 조합 '공동운영
-------	---	----------------------------------

- 상담 결과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제2항에 의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에 의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공동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 위임된 「재활용 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2-163호)제7조제3항에서 해당 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동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분과협의회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참석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Q8

공공기관의 임원인 A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등에 따라 기술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

2023년 3월 24일

행동강령책임관

강 종 훈